WORLD TRADE ORGANIZATION

G/TBT/N/USA/2329

2026-11-04

(26-7823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	**통보국가:** 미국 **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**
2.	**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**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청(PHMSA), 미국 교통부(DOT) [2362]
3.	**조항 2.9.2 [X], 2.10.1 [ ], 5.6.2 [X], 5.7.1 [ ], 3.2 [ ], 7.2 [ 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**
4.	**해당제품(HS 또는 국정세율 품목. 해당할 경우, ICS 번호는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** 액화천연가스(LNG) 시설 및 장비, 소규모 및 모듈형 LNG 플랜트 및 스키드, 극저온 저장 탱크, 용기 및 배관 시스템, 보일오프 가스 압축기 및 기화기, 극저온 밸브 및 안전밸브, 가스 및 화재 감지 시스템, 방화(ICS 코드: 13.220.20), 극저온 용기(ICS 코드: 23.020.40), 파이프라인 부품 및 파이프라인(ICS 코드: 23.040), 밸브(ICS 코드: 23.060),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장비(ICS 코드: 75.180),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취급 장비(ICS 코드: 75.200)
5.	**제목(페이지 수, 언어, 열람방법):** 파이프라인 안전: 액화천연가스 시설 관련 개정안(75페이지, 영어) **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/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**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6/TBT/USA/26_05719_00_e.pdf
6.	**내용:** 규칙안 예고 -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청(PHMSA)에서는 최신 산업 안전 표준을 인용에 의해 편입하고 20년 이상 이루어진 개선 및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(LNG) 시설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. 또한 이번 규칙 제정은 특정 LNG 시설에 위험 기반 규제 방식을 통합하도록 PHMSA에 지시한 의회 위임 사항에 대응한다.
7.	**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** 인체 건강 또는 안전 보호; 환경 보호
8.	**관련 문서:** 2026년 11월 3일자 연방관보(FR) 제91권 69314쪽, 연방규정집(CFR) 제49편 제191부 및 제193부: 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6-11-03/html/2026-22396.htm

	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6-11-03/pdf/2026-22396.pdf 이 규칙안은 도켓 번호 PHMSA-2019-0091로 식별된다. 도켓 폴더는 Regulations.gov(https://www.regulations.gov/docket/PHMSA-2019-0091/document)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의견뿐만 아니라 주요 문서와 보조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. 문서는 도켓 번호를 검색하여 Regulations.gov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. 미국방화협회(NFPA) 59A (2001년판)를 2026년판(액화천연가스의 생산, 저장 및 취급에 관한 표준)으로 대체하여 인용에 의해 편입된 표준을 업데이트한다. 관련 참조 합의 규격(ASME 보일러·압력용기 규격 및 B31 시리즈, 미국석유협회(API) 표준, 미국토목학회(ASCE) 7 포함)을 업데이트한다. API 625, 브레이징 알루미늄 판형-핀 열교환기 제조자협회(ALPEMA)의 브레이징 알루미늄 판형-핀 열교환기 표준, ASTM 화재 시험 표준(ASTM E84, E136, E2652)과 같은 신규 표준을 편입한다.
9.	**채택 예정일:** 추후결정 **시행 예정일:** 추후결정
10.	**의견 제출:** **의견 마감일:** 2027-01-04 **[ ] 통보일로부터 60일**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는 2027년 1월 4일 동부 표준시 오후 4시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 미국 TBT 질의처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접수되는 경우,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가 미국 TBT 질의처를 통해 제출한 의견은 PHMSA와 공유되고 도켓에 제출된다. **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** **의견 제출처:** 미국 WTO TBT 질의처(USA WTO TBT Enquiry Point), 이메일: usatbtep@nist.gov